

부부 공동명의(증여) 신청 안내

Harrington Square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은 「주택법」 제64조 제1항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24.10.02)로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동의 하에 전매제한 기간에도 전매행위가 가능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부부 공동명의(증여) 신청 일정과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계약자님께서
해당 지정기간에 방문하시어 부부 공동명의(증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기간 : 2024년 10월 29일(화) ~ 10월 31일(목) 3일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해링턴스퀘어신흥역.com> | 부부공동명의(증여) 신청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11월 01일(금) ~ 11월 03일(일) 3일간, 10:00 ~ 17:00 | 12:00 ~ 13:00 점심시간

※ 홈페이지를 통해 부부공동명의(증여) 사전예약하신 분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장소 :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견본주택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440번지 문의전화 : ☎1600-1211

■ 부부 공동명의(증여) 신청 절차 안내

01

증여계약서 검인
(성남 중원구청 방문)

검인 장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청 토지정보팀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6(성남동)
-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 문의 : 031-729-6103

구비서류 안내

- 분양계약서 원본(증여계약서상 면적확인)
- 증여계약서 2부(증여지분 표기 必)
- 증여인 및 수증인 신분증, 인감도장 또는 일반도장 각각 준비
- * 증여인 또는 수증인 중 1인방문 가능 단, 상기서류 모두지참 必

02

전매동의
신청서 작성 및
권리/의무승계 진행
(견본주택 방문)

증여인 구비서류(계약자)

- ① 공급계약서 및 발코니확장 계약서 원본
 - ② 증여계약서 원본(검인 必)
 - ③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본인발급) 2부
또는 부동산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발급) 2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분리세대의 경우 총 2부)
 - 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2부
 - ⑥ 인감도장 및 신분증(※모바일신분증 불가)
- ※ 증여인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야 하며,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수증인 구비서류(배우자)

- ① 인감증명서(본인발급) 2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부
 - ② 주민등록등본 1부(분리세대의 경우 총 2부)
 - ③ 인감도장 및 신분증(※모바일신분증 불가)
- * 증여인 대리 접수 시 추가 구비서류
- 수증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 1부 추가
 - 수증인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 위임장 작성(견본주택 비치)
- ※ 수증인의 경우 대리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방문은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 부부공동명의 변경 후 재증여 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공동명의 → 단독명의 변경 불가)
- 동일 세대여도 주민등록등본은 증여인, 수증인 각각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번호 전체 표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본인이 발급하시기 바랍니다.(대리인 발급본 처리 불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권 전매동의 신청서는 당사가 일괄(대리)접수하는 것으로,
명의변경이 완료 시까지 약 한달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부부공동명의(증여) 신청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 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수증인이 외국인일 경우 대표번호(1600-1211)로 추가 구비서류 문의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03

분양계약서 수령

분양계약서 수령 장소

-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견본주택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440번지
- 운영시간 : 월~금, 10:00~17:00 (☎1600-1211)

구비서류 안내

- 전매접수 확인서
- 신분증

04

증여 신고

- 부부 공동명의로 인한 대출·세금 및 기타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증여 계약 후 증여세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어
세금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증인이 외국인일 경우 증여계약서 체결 후 60일 이내에 외국인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